

「2024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

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고용노동부,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관광산업 구인난 해소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「2024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」을 실시합니다. 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05월 07일

서울특별시관광협회장

I.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
- 지원규모 : 150명 (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)
- 지원대상 : 사업장 혹은 근로자가 「23·24년 정부·서울시 고용서비스 등에 참여한 경우*로,
(근로자요건) 24. 2. 27. 이후 주 소정근로 35시간 이상,
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
(사업장요건) 여행업·관광숙박업·국제회의업을 영위하는
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의 서울 소재 기업

*사업장 혹은 근로자가 「23·24년 정부·서울시 고용서비스 등에 참여한 경우

- 근로자가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경우: 채용일 '24. 2. 27. 이후
- 사업장이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경우: 채용일 '24. 4. 24. 이후

- 지원내용: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

1인당 최대 360만원(월 60만원×6개월) 고용장려금 지원

※ 24년 2월 27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, 고용보험 기준

※ 2024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,436원

※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(3개월 분) 장려금 지급하며, 이후 장려금은 근로지속 유지 확인 후 지급

※ 정규직 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(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제외)
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4.9.10.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1) 사업장 기준

- 서울 소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기업*에 해당하는 기업

*관광기업 기준

관광진흥법 제 3조(관광사업의 종류) 중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국제회의업
→ 관광사업등록증상 업종 확인

○ 지원 제외 사유 (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)
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
-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,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
→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

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

- ✓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- ✓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
- ✓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

※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여, 기업이 고의적·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2) 근로자 기준

○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

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

- ✓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
 - 채용일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전 근무기관의 고용보험 기간이 중복된 경우, 이전 근로기관 고용보험 상실 일자에 따라 채용일자를 조절함
 - * 사직서 등 퇴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 - * 단,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→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
- ✓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)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(3개월 이내인자 제외)
- ✓ 「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 -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 -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
 - *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hometax.go.kr>)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 - ↳ 홈택스 누리집 > 민원증명> 사실증명신청 >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○ 지원 제외 사유
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 - 채용일 이후 혼인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, 혼인 일자가 속한 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
-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,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
- 대학 재학/휴학 중인 자

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

- ✓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 중인 졸업예정자(수료자 포함)
 - * 기업은 해당자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
- ✓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*
 - * 자세한 내용은 p.12. <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> 참고 ** 휴학생은 지원제외

- 인력 공급업(7512), 경비 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(74100) 기업에서 파견·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

간접고용

- ✓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(근로자 파견, 용역, 도급, 물량팀 등)
* 단, 파견 및 물량팀 근로자를 대상기업에서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
3) 채용조건 기준

○ (근로계약)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
-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한 경우 포함

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

- ✓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
✓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

○ 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
○ 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

○ (임금수준)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자

* 2024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**11,436원**

* 표준 근로계약서상 통상 시급(11,436원), 통상 일급(8시간 기준 91,488원), 통상 월급 (주 40시간 기준 : 2,390,124원, 세전) 이상 지급되어야 함.

1주	35시간	40시간	44시간	45시간	48시간	52시간
한 달	183시간	209시간	226시간	235시간	252시간	269시간
급여	2,092,788원	2,390,124원	2,584,536원	2,687,460원	2,881,872원	3,076,284원

※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미만 또는 서울형 생활임금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

4) 지원대상 기준

○(지원대상) ‘23년 ‘24년 정부·시 일자리사업(고용서비스 등) 이수 기업 또는 참여한 자

정부·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 인정 요건 **※아래 유형 중 1가지 해당 시 가능**

- 서울고용청 혹은 서울시의 일자리사업 및 고용서비스에 참여하여, 이수증 혹은 확인서 내역이 확인 가능한 기업(서울관광고용지원센터 구인등록 또는 서울고용복지+센터의 기업도약패키지, 채용행사, 채용대행 서비스,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등)
- 서울고용청 혹은 서울시의 해당 업종 관련 교육훈련*에 참여하여 동일직종 혹은 동일직무로 취업한 자 (국민내일배움카드, 청년취업사관학교, 기술교육원, K-디지털과정 등)
- [별첨 1]의 취업지원프로그램*을 이수한(혹은 이수자격이 인정되는) 자로, 일모아시스템 혹은 이수(수료)증으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

* 참여기업에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적합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서울고용센터에서 매칭서비스 제공 예정

3

지원 내용

- 지원규모 : 150명 (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)
- 지원기간 : 3개월~최대 6개월
 - ※ 참여 희망기업은 2024.9.10.까지 사업신청 및 근로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
 - ※ 사업신청(협약체결) 기업은 2024.12.16.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
- 지원내용 :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

1인당 최대 360만원(월 60만원x6개월) 고용장려금 지원

 - ※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(3개월 분) 장려금 지급하며,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~3개월 단위 분할 지급
 - ※ 지급신청서 검토 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

4

신청절차 및 서류
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4.9.10까지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.
- 신청방법 : 신청 양식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제출 후 신청 확인
 - 양식 다운로드 : 서울시관광협회 공지사항(www.sta.or.kr)
 - 제출처(이메일) : plusjob@sta.or.kr / 02-757-7482, 02-6953-7453
- 지원절차



**협약체결 시 서울고용센터의 ‘도약보장패키지’ 등을 통한 매칭서비스 등 적합한 인재채용을 위한
제도 안내 예정

○ 신청서류

구분	②참여기업 신청 서류 -필수
1	[서식 1-1]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2	[서식 1-2] 사업주 확인서 (사업 참여 신청 시)
3	[서식 1-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(사업주용)
4	[서식 1-4] 사업 지원 협약서

구분	④직원 채용 후 제출 서류 -필수
1	[서식 2-1] 채용자 명단 제출서
2	[서식 2-2]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(채용자 명단 제출 시)
3	[서식 2-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(근로자용)

구분	⑤지원금 신청 시 서류 -필수
1	[서식 3-1]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
2	[서식 3-2] 사업주 확인서(장려금 신청 시)

구분	기타 서류 -선택
1	[서식 4]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
2	[서식 5]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

5 유의사항

- 24년도 사업계획상 지원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 (지원 제외 통보)
-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약철회 또는 중도해지, 지원금 반환·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근무여부, 고용형태 등 서류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기간 내 보완제출 하지 않으면 서류 부적합으로 탈락할 수 있음
-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 (www.sta.or.kr)를 통해 공지함
-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
-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 명단을 10일 이내 서울시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함.
- 지원 받은 고용장려금의 용도는 근로자 인건비에 한함.

6 관련문의

- 문의처 : (사)서울특별시관광협회

(☎ 02-757-7482, 02-6953-7453, 02-2138-7409 / plusjob@sta.or.kr)